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의안 번호	95-2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대구광역시 달서구의 본청·소속기관 및 동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본청 : 399명
2. 보건소 : 46명
3. 동 : 337명

제3조(직급별 정원의 규정) 구의 본청, 소속기관 및 동에 두는 직급별·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대구광역시 달서구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책정된 것으로 본다.
- ③ (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규칙」을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시행규칙」으로 한다.